

##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예고

「보성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9일

보 성 군 의 회 의 장



### 1. 개정 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방청의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회의록 공개기한 신설 (안 제56조제6항)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공개기한을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

나. 방청의 제한 고지 신설 (안 제91조의2)

-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 규정

### 3. 개정 규칙(안): 붙임

4. 예고 기간: 2024. 7. 19. ~ 7. 24.(6일간)

## 5. 의견제출

○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연락처 : 061-850-5829)

- 규칙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※ 보내실 곳: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,

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(우 59455)

##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1조의2(방청의 제한 고지)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</p> <p>① ~ ⑤ 현행과 같음</p> <p>⑥ &lt;신 설&gt;</p>	<p>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</p> <p>① ~ ⑤ 현행과 같음</p> <p>⑥ <u>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</u></p>
<p>제91조의2(방청의 제한 고지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1조의2(방청의 제한 고지)</p> <p><u>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</u></p>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## 제56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

-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 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.
-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보성군의회 회의규칙

## 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-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및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
-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제88조(방청의 허가)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## 제89조(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)

-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.
-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, 단체방청권, 장기방청권으로 한다.

## 제90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)

-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
-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.

-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.
-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·성명·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91조(방청의 제한)**

-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- 1.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
  - 2. 주기가 있는 자
  - 3.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
-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.

**제92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**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1.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
- 2. 모자·외투를 착용하는 행위
- 3.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
- 4.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
- 5.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
- 6.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·녹화·촬영행위
- 7.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
- 8.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